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18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강선영·이인선·이헌승
이달희·이만희·주호영
김미애·최수진·조정훈
곽규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방·군사시설 내 대피시설의 설치는 국방부 지침인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설치 의무와 예산 편성의 강제성이 미흡하여 시설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방·군사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건축등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결과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험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4조의3제3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사 대피시설의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제14조의3제3항 중 “결과 국가가 국방·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를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가 국방·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
2.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군사 대피시설이 방호성능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성능보강을 위한 예산의 편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① 국방·군사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용도변경 또는 해체(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제1항, 제83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① ----- ----- ----- ----- ----- ----- ----- ----- ----- ----- ----- ----- ----- ----- ----- ----- <u>이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 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① (생략)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
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
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
다.

<신설>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5. 군사 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1. 국가가 국방·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
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
으로 확인된 경우: 인터넷 홈
페이지에 이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

2.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군사 대피시
설이 방호성능 및 안전에 관
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
우: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성능보강을 위한 예산의 편성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